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2926
----------	------

2025년 12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1일, 김혜지 의원
-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혜지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도박예방교육과 함께 치유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2018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는 도박 예방교육 위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사회 변화에 맞추어 도박 치유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나. 교육감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학생의 도박 치유 지원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다.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라.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교육감은 도박 중독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박 중독 학생이나 가족이 전문상담 등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김혜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26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에 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증가하는 도박 중독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반영함으로써 도박 치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빌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¹⁾.
 -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의 74명 대비 2.3배 증가²⁾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³⁾로 지속 낮아지는 등 도박 범죄가 어린 연령층에 확산하는 점이 확인됩니다.
 - 또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평생 1회 이상 도박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그 중 19.1%가 지난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답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 관내 학생 중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2년 203명에서 2023년 231명, 2024

1) [보도자료] ‘도박 청소년, 더 많아지고 더 어려졌다...1년새 2배 급증’ (조선일보, 202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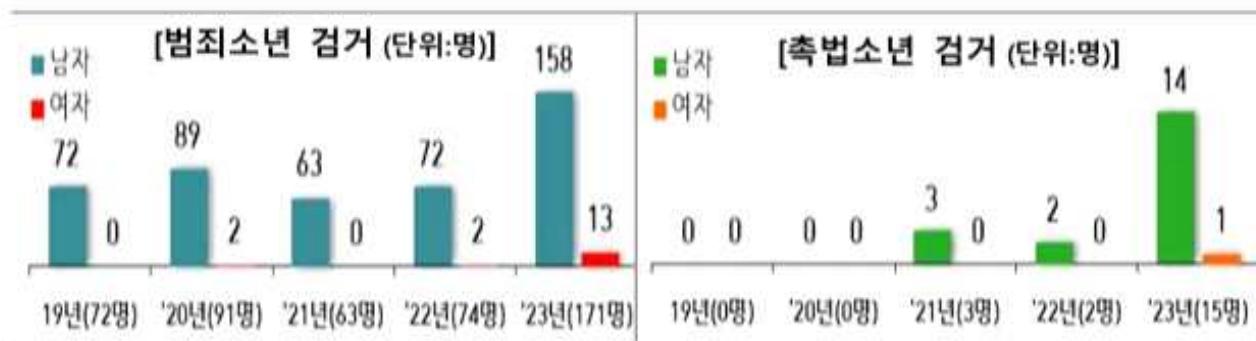
2)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중독성 범죄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대응 시행’ (경찰청 보도자료, 2024.5.3.)

3) 도박 범죄소년 평균연령 : 17.3세('19년)→17.1세('20년)→16.6세('21년)→16.5세('22년)→16.1세('23년)

4)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2.) 23쪽

년 420명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지역 내에서도 청소년 도박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1] 도박혐의 범죄소년 검거 현황⁵⁾



* 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 제외

[그림-2] 청소년 도박 경험률(평생, 지난 6개월)⁶⁾



[표-1]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도박 현황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접수 건)⁷⁾

구분	2022년	2023년	2024	합계
인원	203명	231명	420명	854명
증가율		13.8%	81.8%	

* 도박문제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서울 지역 19세 이하 도박자 본인 실인원

5)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중독성 범죄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대응 시행' (경찰청 보도자료, 2024.5.3.)

6)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2.) 23쪽

7)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1737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이러한 도박 중독으로 인해 학생들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일상 생활과 학업 및 인간관계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⁸⁾ 더욱이 이로 인한 절도, 학교폭력, 사기 등 2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도박 중독에 대한 대처방안은 단순한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기 발견과 치유·재활 지원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재발의 우려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2018년에 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는 예방교육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이미 도박에 중독된 학생에 대한 체계적 치유·재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치유·재활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학생 도박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명에 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 조례가 학생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에 국한된 것과 달리 도박 중독 학생에 대한 치유·재활 지원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한 점

8)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방문제예방치유원, 2025.2.) 86쪽

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동 제명 변경은 조례의 적용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책무에 관한 검토(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교육감이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의 책무규정이 교육감의 도박 예방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만을 규정한 것에서 나아가 교육감의 구체적 역할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예방교육 및 치유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본계획에 관한 검토(안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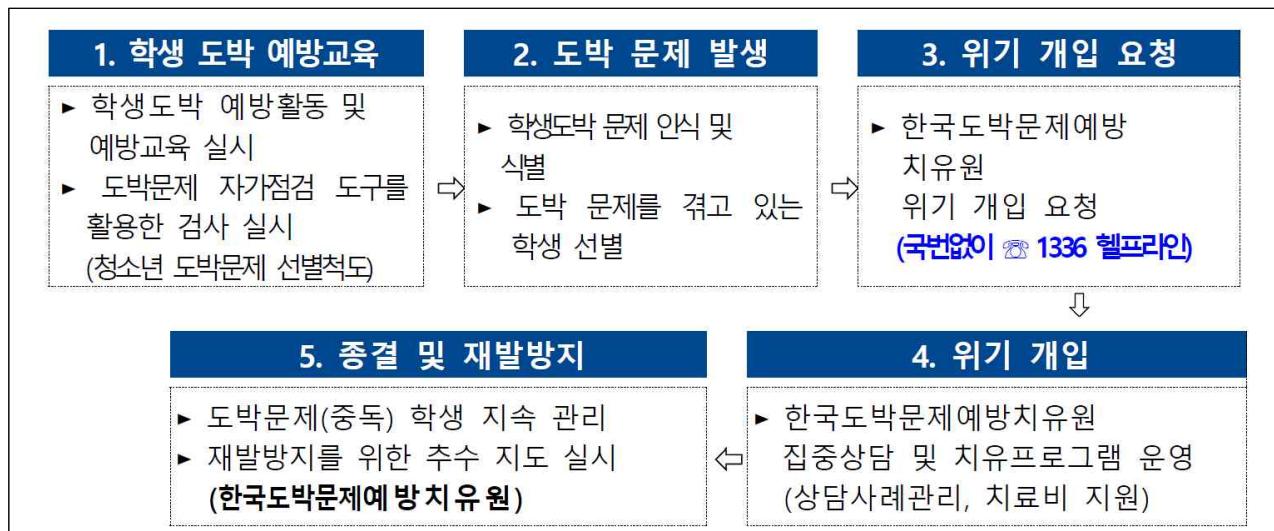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범위를 기존 ‘도박 예방교육’에서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으로 확대했으며(안 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학생 도박 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고(안 제2항), 학생 도박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항).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립한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대한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1336 헬프라인을 이용한 ‘도박 사안 처리 및 개입’ 등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도박 치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2] 2023년~2027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상 추진과제⁹⁾

주요 영역	추진 과제
대응 및 지원 체계 구축	①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② 도박 사안 처리 및 조기 개입
인식 제고 및 예방 활동 강화	①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 ② 예방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보급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① 학생 생활 지도 및 교육 활동 내실화 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그림-3] 학생 도박 관련 사안 처리 절차¹⁰⁾



○ 따라서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기존 사업의 추진 방향과 부합하며, 도박문제의 예방부터 치유·재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9) 2023년~2027년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3.2.) 7쪽

10) 2025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 계획(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5.2.) 5쪽

- 또한 학생 도박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한 안 제4조제4항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2025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간하는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¹¹⁾에 대해 협조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¹²⁾, 자체 실태조사 조사 결과가 국가통계와 연계되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안 제1항),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2항), 필요 시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안 제3항).
- 우선 안 제5조제1항은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연 1회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¹³⁾ 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실제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므로 취지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의무 부과에

11) 국가통계승인(제469001호)에 따라 2024년부터는 매년 통계 작성 예정

12) 2025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 계획(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5.2.) 4쪽

13) 2025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 계획(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5.2.) 7쪽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현행법상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명확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¹⁴⁾.

- 따라서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연 1회 도박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바, 해당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외에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규정은 학교 현장에서 도박 문제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기관에 마련된 강좌 및 연수와의 연계를 통해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표-3] 학교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¹⁵⁾

연번	교육유형	강좌명	교육시간
1	직무연수 (중앙교육연수원)	우리반 도박문제 탐구, 교실 SOS	15차시
2		우리반 도박문제 탐구, 교실 SOS _マイ크로러닝	3차시
3		영화를 활용한 중·고등학생 도박 예방교육 수업지도안	3차시
4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자체 연수 등	찾아가는 도박문제 예방교육 연수	협의 가능 (교육시간, 내용 등)

5)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교육감이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항), 도박 중독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전문상담·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를 규정(안 제2항)하고 있

14) 각급 학교장이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2025.2.28.)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임.

※ 「학교보건법」 제9조에서 학교장이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1회의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15) 2025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 계획(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5.2.) 13쪽

습니다.

- 우선 선별검사는 도박 위험군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문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적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교 내 예방교육과 사후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 검사(CAGI)’ 등 검사 항목이 이미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에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4]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검사 CAGI (Canadian Adolescent Gambling Inventory)¹⁶⁾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이런 경험들을 겪었는지, 겪었다면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생각해보고,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돈내기 게임이란 도박을 의미합니다.)					
		없다	기묘했다	자주했다	거의 항상
1	돈내기 게임 때문에 단체 활동이나 연습에 빠진 적이 있나요?	0	1	2	3
2	돈내기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나요?	0	1	2	3
3	돈내기 게임을 위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요?	0	1	2	3
4	돈내기 게임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나요?	0	1	2	3
5	전에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내기 게임을 한 적이 있나요?	0	1	2	3
6	돈내기 게임 하는 것을 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선생님에게 숨긴 적이 있나요?	0	1	2	3
7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0	1	2	3
		없다	1~3회	4~6회	7회이상
8	밥이나 옷, 영화표 구입 등에 써야 할 용돈을 돈내기 게임에 쓴 적이 있나요?	0	1	2	3
9	돈내기 게임을 위해 남의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나요?	0	1	2	3

※ 문제없음(0~1점), 위험수준(2~5점), 문제수준(6점 이상)

- 따라서 안 제6조제1항은 선별검사 실시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도박 위험도를 정기적·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1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 예방홍보-선별검사 및 조기개입-청소년
<https://www.kcgp.or.kr/portal/pp/selfDgnss/cagiDgnss.do?menuNo=200032>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6조제2항은 교육감이 도박 문제를 겪는 학생과 그 가족이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상위법의 위임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은 학교장이 학생 도박 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¹⁷⁾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에서 대상을 학생에 한정한 것에 비해 조례안에서는 학생의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법률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한 주체가 학교장인데 비하여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안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주체의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해석이 다소 불명확합니다.

- 따라서 동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안내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에 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교육감이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안 제1항),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캠페인·홍보활동 및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 지정·

17)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은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박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부 역시 2024년부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¹⁸⁾」을 운영하여 도박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7조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문화적 접근 방식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박 문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7) 사무의 위탁에 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감이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재활 지원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항),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항).
-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전문성이 있는 업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¹⁹⁾ 정하고 있고, 특히 도박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위탁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조문은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

18) 2024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월 셋째주), 2025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2025.5.12.~18.)

1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탁 근거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8)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²⁰⁾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역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²¹⁾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9조는 법령에서 부과한 비밀준수 의무를 재확인한 것으로, 예방교육, 선별검사, 상담·치유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업무 신뢰성을 보장하는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 8. 20.).²²⁾

20)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21)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 8. 2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실시하여야 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 전단).
- “안내하여야 한다” 를 “안내할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6조제2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26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 교육감에게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 법률의 위임 없이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치입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5조제1항 전단 및 안 제6조제2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 전단).
-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전단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p><u>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 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u></p>	<p>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p> <p>-----</p> <p>-----</p> <p>-----</p> <p>-----.</p>
〈신 설〉	<p><u>제6조(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u></p> <p><u>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u></p>	<p>제6조(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p>

수 있도록 안내하여
야 한다.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예방교육”을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생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제2항의 교육·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u>	<u>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u>
<u>제3조(책무) (생 략)</u>	<u>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u> <u>1. ~ 3. (생 략)</u>	<u>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u> <u>② -----.</u> <u>1. ~ 3.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4. 학생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5. -----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u>
<u>③ (생 략)</u>	<u>③ (현행과 같음)</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u>〈신 설〉</u>	<p><u>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u></p> <p><u>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u></p> <p><u>②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도박 예방 교육과 제2항의 교육·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u></p>
<u>〈신 설〉</u>	<p><u>제6조(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①</u></p> <p><u>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7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u> <u>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u></p>
<u>〈신 설〉</u>	<p><u>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u>〈신 설〉</u> <u>제5조 · 제6조 (생 략)</u>	<p><u>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10조 · 제11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u></p>